

## 2021 년 국가인권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요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1949 년 이래 김씨 일가가 지배해 온 권위주의 국가이다. 2011년 김정일의 사망 직후, 그 아들인 김정은이 국가 원수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장, 조선인민최고대표 직을 겸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정은은 “영원한 주석”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할아버지 고(故) 김일성이 맡았던 조선노동당 총비서 직에 올랐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9 년 3 월의 선거는 자유 선거 또는 공정 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

주요 국내 보위 기관으로는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보위국이 있다. 이들 기관 간 권력 및 책임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권력이 한 곳으로 예측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북한 당국은 보위 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위 기관 소속 관리들이 수많은 학대를 자행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에는 북한 정부에 의한 불법적 혹은 임의적 살인, 북한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북한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가혹하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여건의 구금 시설, 자의적 체포와 구금, 정치범과 정치적 피구금자, 해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행위, 사법 독립 부재, 임의적 또는 불법적 사생활 침해, 범죄 혐의자의 가족에 대한 연좌 처벌, 언론인에 대한 폭력과 폭력의 위협, 부당한 체포와 기소, 검열 등을 비롯한 자유로운 표현과 언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극심한 제약, 국내 이동·거주의 자유 및 출국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약,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정부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정치 참여에 대한 극심한 제약, 심각한 정부 부패, 젠더 기반(gender-based) 폭력에 대한 수사 및 책임의 부재, 재생산 보건(reproductive health) 접근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강제 낙태와 강제 불임을 비롯한 중대한 장애 요소, 인신매매, 독립적 노조의 불법화, 최악의 형태를 띠는 아동 노동 등이 포함된다.

북한 정부는 인권 유린 또는 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19 예방 조치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외국인의 거주와 방문에 대한 제약이 지속되었으며 탈북자의 수가 감소했다. 인권 유린 및 부패에 대한 처벌 부재는 지속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이다.

##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 a. 임의적 생명 박탈과 여타 불법적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

북한 정부 또는 정부 요원이 임의적, 불법적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다. 북한 정부에는 제대로 된 수사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정치범, 반정부인사,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정부 관리 및 기타 범죄 피의자들을 처형한 사례가 있다. 북한 법률은 가장 “중대”한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에 대해 유죄 확정 즉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정변이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목적의 테러 행위, 탈북 또는 국가 기밀 전달을 비롯한 반역행위, 다른 나라에서는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사회·정치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기만적인 파괴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포괄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절도, 군사시설·국유재산 파손, 마약 유통, 위조, 사기, 납치, 포르노물 유통, 인신매매 등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한 범죄에 대해서도 북한 법률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와 언론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정치범 또는 장애인이거나, 정부 관리나 교도관에 의해 강간을 당했거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산모를 대상으로 영아 살해를 자행하거나 해당 산모들에게 영아 살해를 자행하도록 요구했다. 다수의 수감자가 고문, 질병, 굶주림, 비바람에 노출, 또는 상기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한국) 내외 비정부기구(NGO) 및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무단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은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공개 처형될 수 있고, 정치범 수용소 간수들 역시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제1절 c. 감옥 및 구금시설 실태 및 ‘정신병원 내 탈북자 자녀 처형’ 부분도 참조할 것)

또한, 북한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처형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한 비정부기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WJG)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총 610명의 인터뷰 참여자 중) 탈북자 84명으로 구성된 부표본(sub-sample) 중 83%가 생애 중 공개 처형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 학습 차 공개 처형에 참석했다고 보고한 탈북자도 있었다. 한국 정부의 국책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탈북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매년 발간하는 <2020년 북한인권백서>(이하 “백서”)는 공개 및 비밀 처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언들을 수록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처형의 목적이 마약 거래나 한국 영상물 시청 및 배포,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증언에 따르면 성경을 소지하거나 반체제 선전 자료 배포, 미신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형이 이루어졌다. 통일연구원은 공개 처형의 빈도가 최근 몇 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4월 강원도 원산에서 한 남성이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금지법을 위반하여 한국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판매한 혐의로 500명의 군중 앞에서 공개 총살형에 처해졌다. 2021년 11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북한에 밀반입해 플래시 드라이브에 담아 판매한 함경북도의 한 남성 역시 총살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2021년 12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WJG)은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연구 보고서에서 탈북자 인터뷰 및 양강도 혜산 지역의 위성 사진을 토대로 지방 비행장, 중국 접경지대 및 주거 지역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서 공개 처형을 진행하고, 처형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참석한 군중들의 녹음 장비 소지 여부를 감시하는 국가 전략이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6년 간 진행된 이 연구는 또한 “북한 내에서 은밀한 처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다수의 인터뷰 참가자들의 진술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당해 연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 및 제7군단 병력이 중국 접경지대에 대규모로 배치되었으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지대에 설치한 완충지대에서 “사살” 명령을 2020년 8월 시행함에 따라, “접경지대 배치군에 의한 반복적인 발포”가 있었다. 아울러 2021년 1월 초에는 평안북도의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또는 밀수를 시도하던 북한 주민에게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5건 발생했고, 2월 초에는 한 군인과 그 여자친구가 자강도 자성군에서 중국으로 강을 건너려고 하던 중 북한 국경 수비대의 발포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2021년 8월 11일 북한 국경 순찰대는 양강도 혜산 압록강변에서 노동여단 탈영자로 전해지는 한 남성에게 발포하여 사살했다. 9월 30일 폭풍군단은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한 후 함경북도 회령으로 입경을 시도하던 북한 남성을 발견하여 사살했다. 2021년 8월 23일 세 명의 유엔 보고관이 이러한 사살 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들의 활동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WJG)이 사살 명령과 관련하여 북한 정부를 압박해 달라고 유엔에 요청한 후 이뤄졌다. 2021년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러한 명령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2020년 9월 언론은 북한 당국의 사살 명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포 때문이라고 전하며, 북한과 중국 간의 1,100~2,000 야드에 걸친 완충지대를 묘사한 이미지와 함께 북한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사람은 “무조건 총살한다”는 경고를 담은 2020년 8월의 포스터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정부는 제한과 국경 통제를 비롯해 정부 지원에 따른 위협과 살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당해 연말 기준 북한 정부는 당국에 의해 부당하고 근거 없이 억류된 뒤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오토 뱀비어의 사망 관련 정황을 여전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 **b. 실종**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언론 보도는 북한 정부가 실종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언론은 북한 정부가 탈북자들을 납치하여 강제 송환하기 위해 국가보위성 요원들을 북한 국경 인근의 중국 도시로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한국에 정착한 뒤 중국을 방문한 탈북자들을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의 가족에게 탈북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설득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위원회(HNRK)에 따르면 북중 접경 지역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에 따라 수감자들을 내륙의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강제 실종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1970-80 년대에 북한 정부가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12 명의 행방에 대한 조사는 당해 연도에 진전이 없었다.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실종 일본인은 2021년 7월 현재 현재 873명이다.

한국 정부와 언론 보도는 1970~80년대에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도 타국민들을 납치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는 납치 연루에 대해 계속 부인했다. 토마스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전쟁 이후 516명의 한국 민간인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어 아직 귀환하지 못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 집계하고 있으며, 그 외 수천 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 비정부기구들은 한국 전쟁 중 북한 정부가 민간인 2만 명을 납치했고 이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당국은 실종자의 행방 확인을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법률은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소식통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비정부기구 보고서는 일부 구금 시설에서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고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보고된 고문·학대의 방법으로는 혹독한 구타, 전기 충격, 비바람에 장시간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 노출과 같은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좁은 “형벌실”에서 최장 수 주 간 감금,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무릎을 꿇거나 앉아 있도록 강요, 손목으로 몸무게를 지탱한 상태로 매달아 놓기, 물고문, 두 손을 등 뒤에 깎지 끼고 쪼그려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는 “펌프” 등의 방식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또는 쪼그려 앉았다 서기를 쓰러질 때까지 반복하도록 강요 등이 있었다. (제1절 a.도 참조할 것)

노동교화소에 구금되었던 이들은 북한이 가혹한 여건 하에서 어려운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했다. (제7절 b.도 참조할 것)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인접한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탈북을 시도한 후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한 구타, 고문, 성폭력이 행해졌다는 혐의가 다수 제기되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중국에서 송환된 어린이들이 고문, 언어 폭력, 구타, 고된 노동, 굶주림 등의 폭력을 겪었다고 전했다. 2021년 1월 11일 OHCHR 보고서에 따르면 구타, 육체적 고통 유발 자세(stress position), 정신적 학대, 강제 노동, 의료 지원과 위생·청결용품 미제공, 굶주림 등이 결합되어 구금 중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이는 극도로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동 보고서는 이 같은 학대에 관한 다수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관리들이 담당 수감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신체적 그리고/또는 정신적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했으며 현재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발표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WJG)의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연구 보고서는 처형 직전의 피의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피의자의 존엄성 부정과 대중에 대한 경고 목적의 폭력 사용,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고문·처형·시신 모독 등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는 공개 성명, 희생자의 가족이 처형을 지켜보도록 강요당한 사례를 묘사하는 증언을 담고 있다.

교도관들에 의한 신체적 학대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20 북한인권 백서>에 따르면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당국이 여성을 남성과 분리된 공간에 수감하고, 여성에게 빈번한 성적 학대를 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동 백서는 강제 송환된 여성 탈북자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구금시설과 감옥에서 훨씬 더 심각한 성적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몇 년 간의 보고서에 따르면 (역주: 구금시설 내에서) 강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도관 및 기타 관리들에 대한 처벌이 부재하고, 이들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 수감자를 여성 교도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 기준과는 달리, 남성 교도관이 감독을 거의 전담했다는 여성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서 생존자들은 구류시설(집결소)과 미결 구금·취조시설(구류장)에서뿐 아니라 시설 간 이송 과정에서 비밀 경찰(보위성) 또는 경찰 취조관에 의한 광범위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2020년 10월 보고서 <짐승보다 못한: 북한 미결 구금시설에서의 학대와 정당한 절차의 위반>은 북한의 미결 구금 제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폭력적이며 정당한 절차가 전적으로 부재하다고 밝혔다. 미결 피구금자들은 가혹한 여건을 겪었으며, 조직적인 고문·성폭력,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여건, 강제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전해진다.

지난 7월 14일 중국은 약 50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송환된 탈북자를 비롯해 여전히 중국에 억류되어 강제 송환 위협에 처해 있는 1,0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강제 노동, 투옥, 성폭력,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제1절 e. 정치적 동기에 의한 보복도 참조할 것).

보위 기관 소속 관리는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행위를 자행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 **감옥 및 구금시설 실태**

식량 부족, 과밀 수용, 신체적 학대, 불충분한 위생 여건과 의료 처치로 인해 감옥 내 환경은 가혹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다. 비정부기구, 탈북자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강제 노동수용소와 정치범수용소 등 다양한 유형의 감옥, 구금시설,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관리소(정치적 처벌 목적의 노동수용소), 교화소(교정 및 교화 시설), 교양소(노동 개조 시설), 집결소(경범죄자 집단 시설), 노동단련대(노동 교육장), 구류장 또는 감옥(취조 시설 또는 감옥) 등 여섯 종류의 구금 시설이 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의하면, 국가보위성이 관리소를 관리하고 국가보위성 혹은 사회안전성이 여타 구금 시설들을 관리한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수에 관해 비정부기구들은 다양한 추산을 내놓았다. 북한인권위원회(HRNK)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처마봉 통제구역과 관리소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25호 등 6개의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최근 추산(2013년)에 따르면 80,000~120,000만 명의 수감자가 관리소에 있었다. 비정부기구 엔케이워치(NK Watch)는 2019년 9월 ~ 2020년 7월 중 135,000명의 정치범이 수용소 4곳에 지속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탈북자들은 관리소 내에 이름 없는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감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은 (처마봉 통제 구역 외의) 5개 관리소가 개천(제14호), 요덕(제15호), 화성/명간(제16호), 북창(제18호)와 청진(제25호)인 것으로 파악했다.

관리소는 종신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과 석방이 가능한 “혁명화” 혹은 교화 구역으로 구성된다. 북한 정부에 적대적이라고 국가가 판단하거나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 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경우, 가족의 일원이 혐의가 있거나 체포되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모두 구금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수의 증가로 인해 그 가족 전체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기가 어려워지자 아동의 경우 수용소에서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동 백서에는 가족 중 자녀는 석방되고 부모만이 구금된 사례도 일부 있었다는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자녀가 정신 병원에 구금된 후 그곳에서 처형된 사례도 있었다.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비정치적 범죄 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 시설에 보내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킨 사례도 흔히 있었다고 전해진다.

지난 8월 언론은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갇혀 있는 지역 여관, 요양원 및 기타 임시 시설을 대체할 “전문 격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예비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임시 시설에는 의약품과 충분한 식량이 부족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달 언론은 북한 정부가 “격리 규칙 위반자를 광산과 벌목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종신형’ 수용소인 ‘전면 통제 구역’에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와 그 외 수용 시설에 수감된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피구금자 및 수감자들은 지속적으로 폭력과 고문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구금 시설에서 수감자들은 음식이나 의료적 치료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노동교화소에 최대 수천 명의 정치범, 경제사범, 일반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2020년 유엔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발표한 <북한의 장기 노동수용소 제1호 교화소(개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20곳 이상의 교화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 보고서는 여러 인공위성 사진 분석에 의거, 평안남도 개천 인근의 제1호 교화소 수감자 인원이 2,000~6,000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인권위원회(HNRK)가 2020년 공개한 또 다른 보고서인 <북한의 장기 노동수용소 제12호 교화소(전거리)>는 당해 교화소에 정치범과 비정치범이 모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HNRK에 따르면, 여러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회령시 인근의 제12호 교화소에 약 5,000명이 수감되어 있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중국으로 불법 월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RNK 보고서는 제12호 교화소 내에서 부상, 질병, 교도관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수감자의 시신을 은밀하게 처리하기 위한 화장장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증언도 수록했다.

2021년 7월 22일 HRNK 보고서 <북한의 장기 노동수용소 제8호 교화소(승호리)>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평양에서 동쪽으로 약 16마일 떨어져 있으며, 수감자 2,000명이 이곳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있다. HNRK는 위성 사진을 통해 해당 교화소의 시설 중 두 곳이 그곳으로 직통 연결되는 “많이 이용된 흔적”이 있는 6곳의 소규모 광산에서 1,200피트 이내에 있으며, 이는 수감자들이 채광 작업에 이용되었다는 “강력한 징후”임을 확인했다. 해당 교화소의 전(前) 수감자 한 명은 채굴장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수용소 바닥 일부가 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으며, 하루는 중국으로 수출할 인형 속눈썹을 연결하는 수출 부서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해당 부서의 여성들이 바닥의 뜨거운 부분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5분도 되지 않아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고 HNRK에 증언했다. 해당 수감자는 자신이 수감된 기간 중 5~6명의 수감자가 더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전했다.

2021년 11월 3일 HRNK 보고서 <북한의 장기 노동수용소 제3호 교화소(토성리)>는 위성 사진과 인터뷰 대상자의 증언을 통해 수감자들이 “농업 생산과 의류, 자전거 등 일부 경공업 부문에서 강제 노동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는 “각각 다른 규모의 세 무리로 추정되는 수감자들이 교도소 정문 밖과 인근 지원 구역에 대형을 이루고 있으며” “다수의 곡물 더미로 보이는 것”이 수감자들 바로 옆에 쌓여 있는, HRNK의 표현에 따르면 “뭔가 묘한 상황”을 담은 2021년 3월 위성 사진을 수록하여, 인근 농경지 작업에 수감자들이 이용되었다는 증언을 뒷받침했다. HRNK 사무총장은 동 교화소의 위치(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신의주시)가 “북한의 비공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불법 국경 무역 측면과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이 택하는 이동 경로 측면에서 모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 정부가 “코로나 예방을 구실로” 시장과 탈북 시도를 모두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22일 HRNK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제14호 관리소 개정1판>의 발간을 알리며 해당 수용소 전체가 수감자 석방이 불가능한 “전면 통제구역”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찰된 물리적 보안 조치로 미루어 볼 때” 수용소 경계 내부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수감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농경지, 과수원, 가축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벌목과 목재 제품 생산에 강제 동원되는 한편으로, 경공업 시설과 광산에 파견되어 강제 노동에 종사하기도 했다. 동 보고서는 수감자들이 일상적으로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며, 식량 배급도 제한적이었다는 여러 인터뷰 대상자의 증언을 인용했다.

HRNK의 2017 년 보고서 <또다른 수용소, 북한의 ‘안전부’ 수용소>에 따르면 교화소와 관리소 시설 모두 극히 가혹한 여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탈북자 증언을 인용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투옥, 강제 노동, 연명하기 힘든 수준의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물리적 여건:**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따르면 수용소 내 영양, 위생, 의료 여건은 끔찍한 수준이다. 수감 중 발생한 사망 건수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즉결 처형, 고문, 적절한 치료 부족,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이 흔한 실정이다. 2014 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COI)의 보고서는 굶주림과 방치, 고된 강제 노동, 질병, 처형에 따른 “수감 중 극도로 높은 사망률”을 언급했다.

정치범들은 일반 수감자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 지난 7월 언론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수가 2020년 3월 이래 209,000명(추정치)에서 약 232,400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빈번하게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제18 호 관리소 출신인 한 탈북자에 의하면 과로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한 해 10 명에 달한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제14호 관리소 수감자들은 여름에는 하루 12 시간, 겨울에는 하루 10 시간 작업을 하고 한 달에 하루를 쉰다. 관리소는 새해 첫날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한다. 12 세 이상의 어린이들도 작업에 종사했고, 간수들은 65 세 이상의 수감자들에게는 가벼운 임무를 맡겼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2016년 보고서 <수용소 주식회사>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3곳과 교화소 4곳에 소재한 광산에서 수감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투입되고 있으며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수감자는 발에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지만, 부상 당일에 광산으로 복귀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증언했다. 수감자들은 아플 때에도 작업에 투입됐다.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수감자는 배식량이 축소되고 폭행을 당했다. 절도 행위가 적발된 수감자는 임의적이고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

북한 당국이 청소년을 그 가족과 함께 구금하고 구금 시설에서 고문, 학대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 수감자 및 피구금자가 면회인을 적절히 접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탈북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기독교 신자인 수감자들은 여타 수감자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구금시설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 수용 당국에 적발된 수감자들이 실종된 사례가 2016 년 보고되었다. 가혹행위에 관한 신뢰할 만한 주장이 제기된 경우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청리 노동교화소에서의 장기 노동교화에 관한 2019 년 북한인권위원회(HRNK)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 특히 군 및 내부 보위기관 관계자들이 수용소에서의 활동에 대한 위장·은폐 조치를 취했다.

**독립적 감시:** 북한 정부는 교도소 실태 점검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불허했다.

또한 여타 인권 조사관들의 교도소 및 구치소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 법률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탈북자, 언론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북한 법률은 기소 및 재판 기간 동안 구금을 제한하고 영장에 따른 체포를 규정하고 자백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위 기관원들은 정치적 범죄의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체포하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하였다고 전해진다. 한국의 한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사회안전성은 검찰의 승인 없이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부패를 우회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진다. 한 비정부기구는 법적으로 조사관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최장 2 개월 간 개인을 구금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국가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 조직이 용의자들을 수개월 간 지속적으로 심문했다고 보고했다. 재판이 있을 때까지 보석 또는 석방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을 북한 정부가 마음대로 구금, 수감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키는 데 대한 제약은 없다.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관련인들은 사실상 피구금자에게 적용된 혐의 및 형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전해진다.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피구금자의 체포·구금·형량에 대해 가족들은 통보받지 못한다. 구속적부심 혹은 항소 제도는 법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존재하지 않는다. 2015 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에서 채택한 의견서에 따르면, 정치적 죄목으로 수감된 피구금자의 가족은 피구금자의 석방을 청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데 이는 국가가 이와 같은 정치범 옹호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가족의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구금자의 변호인 접근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자의적 체포:** 자의적 체포가 이뤄진다는 보고가 있다. 2020년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자의적 체포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정치적 범죄, 대한민국 입국 시도, 종교 활동 참여, 외국 매체의 시청·배포 등을 이유로 자의적인 체포가 흔하게 발생했다고 전했다.

6명의 대한민국 국민(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8년 간이나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피구금자의 법정 이의제기 가능 여부:** 탈북자들에 따르면,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2020년 10월 보고서 <짐승보다 못한: 북한 미결구금시설에서의 학대와 정당한 절차의 위반>은 북한의 미결 구금·조사 제도가 “불투명”하며, “명백한 유죄 추정”이 적용되며 수사 또는 예비 조사 단계에서 구금에 대한 사법적 검토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고문,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강제 노동에 대한 전(前) 구금자들의 묘사를 인용했다.

#### **e. 공정한 공개 재판 받을 권리 없음**

북한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법원)는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의하면, 수사 혹은 예비 심문 단계와 구금 시설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에 의한 뇌물 수수와 부패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2020년 10월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에서 재판 전 구금시설 내 미결수들의 처우가 대개 연줄과 재력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 **재판 절차**

공식적인 형사 소송 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입수할 수 없는 실정이며, 사법 제도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은 교통 법규 위반 및 기타 경범죄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국한되었다. 2020년 반동사상 금지법 위반 등의 범죄에 관한 공개 재판이 이뤄진 사례도 일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2절 a.도 참조할 것)

북한 헌법은 세부적인 사법 절차상의 보호 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피소자(피고인)의 변호권이 보장된다. 일부 보고서는 정치범과 비정치범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북한 정부가 비정치범에 국한하여 재판과 국선변호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위성이 모든 정치적 사건에서 “사전 심리”나 예비 조사를 수행하지만 재판은 법원에 의해 이뤄진다. 일부 탈북자들은 국가안전보위성도 재판을 진행한다고 증언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탈북자 증언을 인용하여 정치범 수용소 수감 여부는 재판에 상관없이 국가보위성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인이 존재한다는 징후는 없었으며, 북한 당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징후도 없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COI) 보고서에 따르면, “수감자 중 대다수는 재판 없이 혹은 국제법에 규정된 절차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하지 않는 재판에 근거하여

투옥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구금의 희생자들이다.” 2009~2019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 2020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들이 적법한 절차나 공정한 재판 없이 수감된 후 성폭력, 강제 낙태, 영아살해, 강제 노동, 위험한 여건의 과밀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북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은 14세 미만인 자에 대한 형사 사건을 기각하며 14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적 교양 처분을 적용하지만, 해당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거의 입수할 수 없었다.

### **정치범 및 정치적 피구금자**

정치범과 정치적 피구금자의 전체 규모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으나,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정치범 노동 수용소인 관리소에 80,000~120,000명이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관리소 수감자 대부분이 종신형에 처해 있으며 수감자의 3대 가족이 포함된 경우도 다수 있다. 비정부기구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기타 수감자 및 피구금자들보다 처벌은 더 가혹하게, 보호는 더 미약하게 받았다.

2021년 10월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현 정치 제도와 국가 지도층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이들(한국에 가려고 시도했거나, 기독교도와 교류했거나, 탈북자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브로커 또는 인신매매범)이 관리소로 보내져 “적절한 식량, 깨끗한 물 및 위생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비인도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많은 경우 고문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구타를 포함한 학대를 당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OHCHR은 정치범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며 그 가족들은 그들의 생사와 소재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9년 북한을 탈출한 서울의 인권운동가 이한별은 친오빠 이세일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탈북을 시도하다 구금된 2009년이었다고 2021년 5월 15일 언론에 밝혔다. 그는 몇 년 전 오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수소문했지만 “함경북도 중국·러시아와의 접경지에 위치한 수용소에 있는 것 같다는 간접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북한 정부는 정권 비판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거 보고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탈북 시도나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 일원과의 연락,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언급하는 행위, 혹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전해진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UNCOI)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일반” 재소자들은 실제로 “국제법과 양립될 수 있는 실체적 이유 없이 구금된” 정치범들이었다.

## 해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행위

### 국외 지역에서의 살인, 납치, 강제 송환, 또는 기타 폭력 또는 폭력 위협: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북한 납치 요원들은 중국 활동에 초점을 맞춰,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운 대한민국 시민을 납치했으며 “중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2021년 2월 언론은 지난 5년 간 42명의 탈북자가 실종되었다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성명과 함께, 일부 사례의 경우 북한 국가보위성의 “납치 또는 기타 부정행위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한 탈북자의 관측을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021년 10월 김정은은 중국으로 월경하여 탈북한 “국경경비대 무장 군인의 국외 체포 명령을 하달했다.” 함경북도 무산군에 주둔하던 이 경비병은 9월 30일 두만강을 건너 지린성으로 탈출했다. 두만강 북한 측에서 2주간 진행한 수색이 실패한 후 해당 사건이 북한 중앙 정부에 보고되었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군 보위국은 중국 국경 수비대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체포조를 중국으로 파견했다. 북한군 당국은 “자동보총과 약 30발의 실탄을 소지한” 군인의 탈북을 “정치적 사건”으로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비병의 체포 여부에 관한 징후는 당해 연말까지 없었다.

**위협, 괴롭힘, 감시, 강요:** 북한 정부는 탈북자 및 기타 외부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고 위협하려고 시도했다. 2018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탈북자 가족들에게 더 큰 압력을 가해 탈북자의 귀국을 압박하도록 국가 기관에 지시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귀국을 종용하는 연락을 했으며, 이는 북한 정부 당국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탈북자들은 2020년에 북한 정부발로 추정되는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2021년 5월, 한국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 국가보위성을 도운 혐의로 북한 공작원 송춘선(일명 송모)을 체포했다. 송씨는 약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며 북한 탈북자들에게 재입북하여 북한 정권의 정치적 목표를 지원하라고 겁박했다는 내용의 자백을 했다. 2016년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북한 친척 송금을 돕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송씨는 국가보위성 위장 요원으로 일하라는 압박을 받다가 2년 후 스스로 한국으로 탈출한 것처럼 꾸몄다고 알려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 비밀경찰 요원 연철남에게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 지인 한 명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시인했으며, 연철남이 자신의 남편이며 북한의 가족들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 친척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화번호가 노출된 탈북자의 의도치 않은 도움을 통해, 연철남은 남한에 있는 다른 탈북자 3명을 찾아내 북한 친척과 연결해 주었고 그 중 한 명을 회유하여 재입북하도록 했으며, 이후 북한 정부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텔레비전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30일, 송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북한은 또한 해외 주재 외교관과 기타 관리들을 닦달하여, 금전적 요구 규모를 늘리고 제약을 강화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협을 가했다. 2021년 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주재 북한 무역 대표관들의 영리 추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를 조선노동당(WPK)와 김정은에 대한 배반 혐의로 처벌하도록 명령했다.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을 중단한 이후 중국에서 소득이 없이 발이 묶인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등 임시 일자리를 구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과 단둥의 북한 무역 노동자들은 두 지역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과 통역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올해 초 RFA는 북한이 매년 4월 15일 정권 수립자 김일성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을 앞두고 빈곤 상태에 놓인 해외무역일꾼들에게 “충성자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 차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들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했다. 2021년 6월 RFA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근무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든 후에도 “충성자금”을 계속 상납해 왔던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북한 당국이 평양의 주택 부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5만 채의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자 충성자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명령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하급 당 간부와 보안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을 받으며 위험한 일에 종사하여 번 돈의 대부분을 이미 충성자금으로 바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평양시 주택 건설 지원금까지 추가로 바치라니 (중략)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 전했다.

**주민 이동 통제 시도:** 북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과 기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이는 현지 당국의 공모로 이뤄졌으며, 북한 국가보위성의 방식과 요원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압력과 유엔 제재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중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강제 노동 사용을 포함한 북한 노동자 고용 관행을 이어갔다. 2021년 11월 1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는 강제 노동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지는 조건에서 일하도록 착취를 당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0년 가디언지(誌)는 북한의 압록강 맞은편에 소재한 중국 단둥 공장에서 수백 명의 북한

주민(대부분 여성)이 강제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격리 가운과 보호 작업복 등 품목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은 수출용 개인 보호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하루 최대 18시간씩, 휴일도 없이 상시적 감시 아래 일했다. 임금의 약 70%는 북한 공장 관리자들이 북한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지는 “중국 공장은 저렴한 순응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북한 정권은 그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챙기는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이었다”고 보도했다. 2021년 기간 중 중국 단둥 내 또는 그 주변에 (강제 노동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노동이 진행된다는 징후가 계속 있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월 현재 북한 노동자 2,000~3,000명이 단둥 내 또는 주변에서 섬유, 전자, 액세서리, 격리 관련 품목 제조뿐 아니라 해산물 가공과 농업에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 캐나다의 대형 여성 의류 소매업체 라이트만스(Reitmans Ltd.)는 거래처인 단둥 화양방직복장유한공사(Dandong Huayang Textiles and Garments Company)의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한 캐나다 방송사가 폭로한 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단절했다. 올해 초 한 외국 정부는 강제 노동 사용이 의심된다고 해당 공장 생산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 바 있다. 2021년 12월 9일 데일리NK는 북한의 국경 폐쇄로 인해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북한 노동자들의 탈북 가능성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해 “점점 더 잔악한 감시와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은 불평·불만을 제기하거나 동향이 “수상하거나” “조국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노동자들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상시화된 실태보고를 요구하는 지시를 내려 이들의 혐의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시에서는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국가보위성에서 규정한 송환 절차”에 따라 북한으로 귀국시키도록 요구했다. 러시아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국가보위성에서 규정한 송환 절차”란 탈북 시도자의 다리를 꺾어 못 쓰게 만든 후 휠체어에 태워 귀국시킨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 탈북을 시도한 주경철 씨는 러시아에 들어온 국가보위성 체포조에게 체포 당한 후 아킬레스건에 상해를 입은 채 마취 상태에서 송환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전해진다.

**쌍무적 압력(Bilateral Pressure):**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개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타국에 쌍무적 압력(bilateral pressure)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2021년 11월 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강제 송환이 이뤄지도록 타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송환된 주민들에게 보복 조치를 가해 억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성폭력 및 젠더 기반(gender-based) 폭력, 사형 조치 등의 처벌로 이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동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모든 국가가 재송환금지라는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2019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윈난성, 허베이성, 지린성 및 광시 좡족자치구에서 최소 52명의 탈북 망명 신청자를 구금했다. 피구금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송환될 경우 고문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데일리NK는 북한이 2020년 국경 간 무역을 차단한 이후 식량 부족으로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랴오닝성 단둥의 탈북자 구금시설이 만원 상태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반 송환 차단은 1년 넘게 유지한 채 강제 송환을 위해 국경을 개방한 후, 2021년 7월 14일 중국은 북한의 소환 요구에 응하여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군인과 공군 조종사를 비롯해 탈북자 약 50명의 신병을 인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이 최소 1,170명의 탈북자를 계속 구금하고 있으며 이들은 강제 송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 탈북자를 송환하기로 북한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중국 국적자의 북한 배우자를 관대하게 대우해 왔으나, 최근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탈북자 체포”가 시작되었다. 활동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지난 7월 송환된 탈북자들과 송환 위험에 처한 중국 내 다른 탈북자들이 북한 도착한 후 강제 노동, 투옥, 성폭력 또는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이 “국제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히며 “송환 시 고문이나 기타 잔혹·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재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주재 북한 요원들이 블라디보스토크, 나훗카, 하바롭스크, 우수리스크에서 탈출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수리스크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 경찰에 탈북 노동자 수배령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또 다른 소식통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다 작업 현장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하며 “북한 요원들에 의한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RFA는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 전에 충성심 심사를 받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해외 파견을 러시아 작업 현장에서 탈출하여 잠적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 민사 절차 및 구제 제도

북한 헌법은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 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북한 주민은 권익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소를 제기하고 권익 침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부 당국이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사회안전성이나 국가보위성은 작성자의 신원 파악에 들어가며 이들은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개인과 기관은 국내의 불리한 결정을 지역 인권 단체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북한 헌법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및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한다. 2019년 12월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보고서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이웃 감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인민반이라는 방대하고 다층적인 정보원 망을 이용해 정권 비판자나 정치범을 색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때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진행하여 법적 권한 없이 가정에 무단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기타 디지털 통신을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했고, 국제전화회선은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외부 정보 유포 관련 727건, 외부 방송 청취 관련 315건, 통신 및 서신 검열 관련 507건의 구금 또는 사법적 처벌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가보위성은 휴대전화 사용 및 전자 매체 접속을 실시간으로 엄격하게 감시했다. 북한 정부 당국은 중국 전화망을 통한 국제전화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접경지역에서 빈번하게 휴대전화 신호를 방해했다. 또한 중국 유심카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을 체포하여 벌금 또는 뇌물을 내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간첩 또는 기타 범죄 혐의를 씌우고 장기 수감 등 혹독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 2020년 10월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정권의 정보 독점 약화: 북한 내 휴대전화>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북한 내 불법 중국제 휴대전화와 합법적 등록 휴대전화가 모두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18%에 불과하지만 무선전화 망은 인구의 94%에게 도달이 가능하다. 국가보위성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체포권을 유지하고 특수 목적의 비군사적 수사를 진행하였다

북한 정부는 주민을 엄격한 충성도에 따른 계층, 즉 성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고등 교육, 거주지, 의료 시설, 특정 상점, 결혼 상대, 식량 배급에 대한 접근권이 결정된다. 개인과 가족의 성분이 양호한 경우 불법적 휴대전화 사용 및 외국, 특히 한국의 매체, TV 프로그램, 영화 시청에 대해 북한 당국이 더 관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 금지법으로 인해 이렇게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거주지에서 퇴거 당한 가족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 a. 표현의 자유(언론 및 기타 매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 포함)

북한 헌법은 북한 국민에게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처벌로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의견과 다른 정치적 의견의 표현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북한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심문을 받거나 체포 당한 이들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한국 문화 토론이나 유포는 반체제적 행위로 표적이 된다. 북한 정부는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한국 문화 콘텐츠의 시청 및 유통, 한국 문화의 표현에 대해 단속했다. 한국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를 경우 노동교화형 2년, 한국의 영화·음반·출판물·서적·노래·그림·사진 등을 보거나 듣거나 보관할 경우 노동교화형 5~15년, 해당 자료를 수입 및 배포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진다.

2021년 4월 북한 당국은 한국 영화·드라마·뮤직비디오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한 남성을 강원도 원산에 모인 500명의 군중 앞에서 공개 총살형에 처했다. 5월 평안남도 남포의 남고생 2명과 여고생 4명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반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노동교화소 5년형을 선고받았다. 11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북한에 밀반입해 플래시 드라이브에 담아 판매한 함경북도의 한 남성이 총살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플래시 드라이브를 구입한 고등학생에게는 무기징역, 드라마를 시청한 다른 학생 6명에게는 5년의 노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해당 학생들의 교장과 담임 교사는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의견 표명, 김씨 일가에

관한 부정적 언급, 한국에 관한 호의적 언급은 “말반동(misspeaking)”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 **표현의 자유(언론 및 온라인 매체 등 기타 매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

북한 정부는 모든 국내 정보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기자들은 기사를 취재할 자유가 없으며 자유롭게 보도할 수 없다. 북한 정부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를 통해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책 출판,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했다. 선전선동부 내에서는 출판방송부가 TV, 신문,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모든 매체의 콘텐츠를 통제한다. 북한 법률에 따르면 미승인 방송이나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최장 1 년간 노동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누범 시 최장 5 년간 수감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언론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방문이 금지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북한 정부가 외국인, 그 중에서도 언론인의 방북을 주의 깊게 관리했으며, 때에 따라 외국 언론인의 추방 또는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외국 정상외의 방북 시 북한 당국은 외국 기자단이 공식 방문단을 수행하고 기사를 송출하도록 허가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 당국이 엄격히 기자들을 감시하였다. 북한 정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관리나 거리의 주민들에게 말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검열 혹은 콘텐츠 제한:**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었고, 공식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외에서 들어온 라디오도 이러한 목적으로 개조되었다. 엘리트 계층 주민들과 호텔 등의 외국인용 시설들은 위성으로 외국 TV 방송 수신에 가능하다. 북한 정부는 해외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지만,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2019년 보고서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 따르면 최근에는 외국 방송사 송수신기가 확산되어 당국의 전파 차단 노력을 압도할 정도라고 전해진다. 북한 관리들은 외국 라디오를 듣거나 외국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단지 비정부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세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투옥하고 처벌했다. 지난 5월 평양 주민들에게 외국 방송 시청을 막기 위해 각 가정에 텔레비전 대수를 보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인터미디어(Intermedia)는 2015년에 실시한 탈북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 거주 중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탈북자가 29%에 달하며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 중 약 92%가

북한에 있는 동안 외국 DVD를 본 적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가 안보:**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들이 북한 정부나 김정은 비판을 비롯한 반국가 범죄로 처형되는 등 구금 및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 인터넷 자유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되었다. 정부의 인터넷 게이트 키퍼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컴퓨터중심은 수용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정보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했으며, 해당 기관 직원들이 사용자의 화면을 상시적으로 감시했다.

북한에는 엘리트 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평양을 중심으로 점차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고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부기구 국경 없는 기자회견은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때에 따라 정부 직원들은 엄격한 감시 하에 제한적으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방문한 모든 웹사이트를 기록하고 삭제 불가능한 스크린샷을 무작위로 찍는다고 전해졌다.

북한 정부는 주민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외국 영화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은 징역형 혹은 사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는 2020년 12월 반동사상 금지법 통과 이후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제2절 a. 표현의 자유도 참조할 것) 또한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한국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서 시청 또는 배포한 혐의로 처형된 사람의 수가 지난 몇 년 간 증가했다고 전하며, 노동교화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2월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내 외국 콘텐츠 확산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에 파일 워터마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이 시스템은 매체 파일이 공유될 때마다 파일명 끝에 사용자 또는 기기 고유의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HRNK는 북한 젊은 세대가 외국 라디오 방송보다 외국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더 선호한다고 전했다.

북한 정부는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차단에 힘쓰고 있다. 언론 보도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경찰은 외국 영화에 대한 제한 조치 집행을 위해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서명 시스템”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기반 검열 프로그램을 북한 내 모든 휴대폰에 추가했다. 이 시스템은

휴대전화를 통한 외국 매체 시청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북한 당국은 불법 매체 저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무작위 검사를 시행했으며, “열람 이력”이라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기기 사용 이력을 추출 및 외부 전송할 수 있다.

##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제한**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했고 예술작품도 통제했다. 교육 과정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북한 정부는 학술 목적 여행을 심각히 제한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요 기능은 김씨 일가 개인 숭배와 북한 체제의 강화였다.

북한은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사상적 교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사상적 교화의 일환으로 단체 행진, 군중 대회, 무대 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고, 수십 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북한 정부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 **평화적 집회의 자유**

북한 헌법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했다.

#### **결사의 자유**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을 제외한 다른 조직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직업 관련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존재한다.

### **c. 종교의 자유**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참조할 것: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 **d. 이동의 자유 및 출국의 권리**

북한 헌법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국내 이동:** 북한 정부는 합법적 국내 체류자들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여행 규정 위반자는 경고나 벌금 혹은 강제 노동에 처해졌다. 극소수의 엘리트 및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주민들만이 개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뇌물 수수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거주하는 도 내에서의 이동은 보다 자유로워졌다고 전했다. 허가증 없이 여행하다 적발되면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들에게 국내 유배(internal exile)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부는 식량 사정, 주택, 보건 및 일반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서의 거주 허가는 물론, 심지어 진입 허가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 관리들은 평양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검문소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언론과 비정부기구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공포때문에 국내 이동 제한을 강화하여 2020년 3 월 이래로 국내 이동이 더욱 어려워졌다. 비정부기구, 외교관, 유엔 기구 관계자들은 최종 출국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양을 떠나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이미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던 외국 관측자들의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원조 상황 감시 활동이 더욱 어려움에 처했다.

**해외여행:**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학자, 근로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북한 정부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과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코로나 19 유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경 지역의 엄격한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허가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주민의 수가 대폭 제한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순찰 및 감시와 더불어, 뇌물을 받고 월경자에게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4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아시아 지역 인권 옹호 국장(Asia advocacy director)은 상황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진술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김정은이 식량 분배에 대한 가혹한 신규 통제를 가하고, 북한 내부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차단하며,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이미 확고한 권력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이 보고됨에 따라 “대량 기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1년 12월 16일 HRW는 김정은이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북한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립시켰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안보리 제재의 영향을 훨씬 뛰어넘는 불필요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거의 모든 비공식·공식 무역을 차단하고, 정보나 사람의 북한 유입·유출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 건설을 위해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인위적인 식량 및 인도주의적 위기”를 조성했다.

북한 법률은 탈북과 탈북 시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 또는 타국 망명 목적으로 월경하는 자(아동 포함)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심각한” 사안인 경우 망명 시도자는 무기징역과 강제 노동,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대부분이 함경북도 전거리 교화소나 평안남도 개천 교화소에 수용되었다고 전했다.

강제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수감되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는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진술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 재정착한 주민을 비롯해 외국인, 종교 단체, 또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사람과 광범위한 접촉을 한 주민들이 특히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한국 통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17년(1,127명)과 2018년(1,137명)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19년 약간 감소(1,047명) 감소하였으며, 그 후 2020년 229명, 2021년에는 63명(잠정)으로 급감했다.

탈북자들의 과거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수개월의 강제 노동형 혹은 단순 경고만을 받을 수도 있음)과 “정치적” 목적으로 거듭하여 월경하는 주민(때에 따라 보다 가혹한 처벌에 처해짐)을 구분하였다. 후자에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단체들과 접촉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 국내 실향민 현황 및 처우**

해당사항 없음

#### **f. 난민 보호**

북한 정부는 국내 유민, 탈북자, 강제송환 탈북자,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우려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또는 기타 인도주의 단체에 협조한 바 없다.

**망명에 대한 접근성:** 북한 법률은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에 관해 입수 가능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 등에 참가하지

않는다.

### **제3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북한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것은 2019 년이다. 해당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다. 북한 정부는 공공연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율과 정부에서 미리 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100 퍼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및 정치 참여:**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설립했다. 풀뿌리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여성과 소수자 단체의 참여:** 북한 법률은 여성에게 평등한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지만, 정부 고위직에 선출 또는 임명된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6 년 기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중 여성 비율은 각각 약 3.1%, 2.8%이며, 조선노동당 지도부 요직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2020년 언론은 여성(박명순)이 조선노동당의 최고위 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후보위원 겸 당중앙위원회 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10월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다. 김여정은 노동당 정치국 소속이었으나, 2021년 1월 당대회 후 정치국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내 약 20개의 부서 및 사무국 중 여성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곳은 1개에 불과하다. 2014 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0 %에 그쳤다.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제4절. 정부 내 부패 및 투명성 부족**

공직부패사건에 실제로 형사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가능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국제기구들은 고위관료들이 처벌받지 않고 부패행위에 관여한다고 대대적으로 보고했다.

**부패:** 부패는 북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보위기관 내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라고 전해졌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구금시설, 수용소, 재판을 비롯한 사법체계 전반에 광범위한 부패가 있다고 보고했다. 일부 주민은 휴대전화 사용 단속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돈’에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휴대전화 내장 데이터에서 국외 통화

기록, 타국의 동영상, 도서, 노래 등이 적발될 경우 뇌물은 주면 휴대전화 압수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 북한> 보고서를 통해 부패한 경찰이 소규모 지방 시장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운영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상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 또한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 결근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투옥에 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국영 사업장 감독관에게 뇌물을 준다고 전했다.

구호식량이 군부와 정부관료집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도 북한의 부패를 보여주는 표지이다. 복수의 정부 부처와 노동당 기구가 부패 관련 사안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침해 의혹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시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협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다수의 단체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관측자들은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 비정부기구와 다수의 국제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북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인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 왔다. 북한 정부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유엔 또는 기타 국제기구:** 북한 정부는 인권 분야에서 유엔 대표들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했다. 북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러한 조사 권한에 대한 인정을 계속 거부했으며, 특별보고관의 방북 신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인해 국제기구와 대다수 외교관들의 북한 내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 정보가 크게 감소했다.

2021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가해자 불처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마지막 북한 방문은 2017 년에 이루어졌다. 당시 방문은 인권 침해 주장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었으며,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특별보고관의 조사 권한을 거부하고 있다.

## 제6절. 차별 및 사회적 학대

###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북한 법률은 여성 대상 강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 대상 강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강간을 범한 경우 최장 5 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해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 년 이상, 해당 강간이 “특별히 중대”하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다. 해당 법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2014 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COI) 보고서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한 억압과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한 분위기로 인해 교도관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다른 수감자가 여성 수감자를 강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 시도 후 북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나 결국 완전히 탈북에 성공한 여성들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해당 여성들은 북송 이후 구금되어 있을 당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2018 년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는 북한에 성폭력·젠더기반 폭력이 만연함을 밝히고, 권력을 가진 공직자 남성들이 2011~2015 년 자행한 성폭행 혹은 성행위 강요의 구체적 사례들을 인용했다.

강간 사건이 발각되더라도 가해자는 단순 면직에 그치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HRW는 2009년 불법 탈북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 경찰서장에게 강간당한 사례를 전했다. 여성은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언급했으나,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재판 중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역주: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말해 봐야)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공히 북한이 이같은 폭력에 대한 보호 혹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자들은 여성 대상 폭력이 가정 안팎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다. 다만 통일연구원 백서는 최근 여성의 경제력 강화로 가정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라는 증언이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역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보고가 있었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탈북자들은 법률 집행이 부족하고 정부 관리들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이 평범한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만큼 흔해졌다고 보고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부 측의 ‘의도적 무지(willful ignorance)’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비정부기구와 탈북자들은 국가보위 관리들이 강제 낙태를 행하고 있고, 이는 산아 제한 목적이 아닌 인권 침해와 강간을 은폐하고 인종적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고했다. 영아살해 사례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취약 인구(vulnerable population)는 재생산 보건(reproductive health)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적 처치에 대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왜소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이 시행되었다는 증언을 수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보고서는 탈북 후 강제 복송을 겪은 다수 여성의 증언을 담았다. 이들은 북한 송환 후 구류장에서 “자궁검사”, 즉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해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중략)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월경 건강(menstrual health)에 관한 2020년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월경은 사회적 낙인을 동반한다. 생리대는 구할 수 있었지만 많은 여성에게 여전히 비싼 가격이었으며, 대부분의 여성은 집에서 만든 재사용 가능한 천 생리대를 사용했다. 적절한 월경 위생의 결여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포용, 여행 및 업무 능력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 정부가 성폭력 생존자에게 어떠한 성 보건 및 재생산 보건 서비스(응급 피임 포함)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차별:** 북한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노동당 또는 북한 정부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연구원은 식량을 확보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노동과 가사라는 이중 부담의 책임에 더하여 임금, 승진 및 배정된 업무 유형 상 차별이라는 형태로 여성차별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 **타인종/민족 대상 조직적 폭력 및 차별**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규모 중국인 집단과 소수의 일본인이 있으나 총 규모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이며, 북한에는 소수 인종·민족 개인 또는 집단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없다.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중국인 집단의 경우 “교육과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북한 관리들이 중국계 혼혈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귀국한 여성들을 “불순한 자”로 취급할 뿐 아니라, 강제 낙태 또는 영아살해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인종적 비하를 일삼는다고 밝혔다.

## **아동**

**출생신고:** 아동은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며, 일부의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의 출생을 통해 취득하기도 한다.

**교육:** 북한 법률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2 년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다수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아동은 출신성분 제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일부 아동들은 비공식적 비용이나 식량부족으로 인해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 완전통제구역 내의 아동들은 완전통제구역 외부의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교과과정이나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

외국인 방문자들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5 학년부터 학교에서 매주 수 시간의 의무 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모든 어린이가 정치사상 교육을 받는다. 2019 년 보고서 <잃어버린 세대: 북한 아동의 건강과 인권, 1990~2018> 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북한 국가 교과과정의 특성이 정치사상교육과 정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강조하고, 교과과정에서 벗어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혜택:**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에 대해 남아와 여아가 동등하게 접근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가능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의료 혜택 접근권은 대체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전반의 보건 및 복지 현황에 대한 2019 년 12 월 보고서에서 공개 입수 가능한 자료와 당해 연도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면접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의료 혜택이 광범위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헌적 증거를 제시했다.

**아동학대:**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 법률은 15 세 미만의 여성과 성교한 남성을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부가 해당 법률을 실제 집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아동혼, 조혼 및 강제결혼:** 혼인가능 최저연령은 남성 18 세, 여성 17 세이다.

**아동 성착취:** 합의된 성관계(consensual sex)가 가능한 최소 연령은 15세이다. 북한 법률은 영리적 아동 성착취를 금지한다. 2019년 외신 보도와 2014 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UNCOI)

보고서가 지적인 바에 따르면, 다수의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인신매매범들의 착취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자주 있었으며 이는 이들 소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이나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억압적 여건, 가난, 식량 부족을 벗어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인신매매범들은 어린 소녀들에게 북한 내 다른 지역이나 중국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실제로는 이들을 착취하여 강제 결혼, 가사 노동 혹은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서울 소재 비정부기구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2019년 11월 발간한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벗어날 수 없는 폭력>에서는 북한 학교·가정·수용소·고아원·구금시설 내에 만연한 아동 학대(성적 학대 포함)에 관한 문헌적 증거를 담고 있다.

**영아살해:** 2020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영아 살해가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 또한 북한 관리들이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 여성의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했다.

**실향 아동:** 비정부기구 보고에 의하면, 상당수의 길거리 아동이 존재한다. 2020년 HRNK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고아는 아니지만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에 의해 버려지거나 가정 내 학대로 인해 스스로 도망친 사례이다. 실향 아동들은 지역 시장이나 기차역 앞에서의 구걸이나 도둑질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10월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 따르면 고아나 길거리 청소년들은 “돌격대”로 장기간·무보수 차출되는 등 아동 강제 노동에 취약한 상황이다. (제7절 c.도 참조할 것)

**시설 내 아동:** 수용소 교도관들은 수용소 내 아동 또는 그 가족이 수용소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고문을 자행했다. 북한 당국은 수용소 내 아동에게 하루 최장 12시간의 강제노동을 시켰으며 수용소 외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수용소 내 아동에게는 교육 접근권도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다.

한국 온라인 뉴스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고아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영양 불충분에 시달렸으며, 시설 직원들은 학교 부채를 갚기 위해 식량을 빼돌렸다고 전해진다.

구금시설 내 아동 외에도, 다수의 아동이 고아원을 비롯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9년 북한인권위원회(HRNK)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고아원,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40개 아동보호시설을 현대화하여 이러한 아동들을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시설에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적절한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아동이 영양실조 및 건강 상태 악화를 겪었다. 고아원 생활 중 아동들은 하루에 한 끼만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식사를 놓고 경쟁하고 싸우게 되거나 생존을 위해 고아원을 탈출하기도 했다. 고아원에 사는 아동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응답자들은 아동들이 고아원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는 대신 돌을 나르는 등 “단순 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 아동 탈취(International Child Abductions):** 북한은 1980 년 체결된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미 국무부의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참조할 것.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Parental-Child-Abduction/for-providers/legal-reports-and-data/reported-cases.html>.

### 반유대주의

유대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 인신매매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를 참조할 것: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 장애인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북한 법률이 장애인 권리 관련 국제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 89%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신축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에 신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정부 정보 및 안내 사항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비정부기구 보고서와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상이군인을 전반적으로 우대했으나, 탈북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일관적이지 않고 형식적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힌 경우가 많았다. 상이군인 이외의 신체·정신 장애인에게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장애인을 평양에서 추방하여 수용소 내에 격리하고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10월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장애인이 평양에서 추방되어 “다른 도시에 있는 제한 구역 또는 시설”에 격리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장애인은 공적 생활 접근성 측면에서 차별을 겪었다. 북한의 전통적 사회 규범에 따라 직장 내 차별을 비롯한 장애인 차별은 묵인되었다(제7절 d.도 참조할 것). 2021년 10월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장애 아동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국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 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별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 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과 더불어, 장애 아동이 건강·교육·사회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이 국가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최근 기준 2017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북한의 특수 교육 제공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했다.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인한 폭력행위, 범죄화, 기타 학대**

동성 성인 간 합의된 성적 활동을 금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인한 차별에 관해서는 입수가 가능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비정부기구들은 품위 및 음란물 관련 법률이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기인한 차별을 가하는 데 법률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14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내 동성 간 합의된 성적 활동의 존재를 부인한 바 있다. 성소수자(LGBTQI+) 권리단체 이퀄덱스(Equaldex)에 따르면 주거와 고용 차별로부터 성소수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 커플의 입양은 불법이다. 이퀄덱스는 동성 간 성적 활동, 법적 성별 변경 권리,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한 상태로 군에 복무하는 게이·레즈비언 주민을 위한 법적 보호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 **제7절. 근로자의 권리**

###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로 교섭하거나 쟁의할 권한이 없다. 북한 정부가 설립하고 그 통제를 받는 노동단체를 제외한 기타 노동단체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 법률은 외국인 기업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업은 노조 활동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노조활동 참여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주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 활동에 간섭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북한 헌법은 주민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권리가 실제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불법 집회 참가 시 노동교화형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등 다수의 국내 노동단체들을 직접 통제한다. 동맹 산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으나,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북한 정부는 업무배정 및 임금결정 등 공식 고용부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통제한다. 합작투자 기업 및 외국인 소유 회사는 정부의 점검을 거친 명단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을 관리위원회에 편입시키며, 위원회는 경영 의사결정 시 노동자들의 의견 제시 통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b. 강제 노동 또는 의무 노동 금지**

북한 법률은 강제 노동 혹은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해당 법률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이나 기타 과업에 주민을 동원했다. “노동교양”과 “노동교화”는 정치범 처벌에 흔히 활용되는 수단이며,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정치범의 경우 계속해서 벌목, 채굴, 작물재배 및 제조와 같은 강제 노동 및 의무 노동이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강제 노동에 대한 처벌은 납치와 같은 다른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 상응하는 수준이 아니며,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았다.

북한 법률은 노동가능 연령의 모든 주민이 일하고 “노동규율과 근로시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농장 및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다수 있었다. 벽돌 제조, 시멘트 제조, 채탄, 채금, 벌목, 철 생산, 농업 및 섬유산업에서 강제 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은 <2018 세계노예지수>에서 북한 주민 1명 중 1명, 즉 약 26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산했다.

2021년 7월 28일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경제가 “강제 노동에 기대어 운영되며, 징집병과 아동을 포함한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동원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보고했다 (제7절 c.도 참조할 것). 지난 6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2020년 중국과의 국경 무역 중단으로 식량 수입이 끊기고 국가적으로 흉작이 발생하자 식량 증산을 위해 전국 각지의 기혼 여성 약 14,000명에게 황해남도에서 농사일에 “자원”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7월 RFA는 북한 정부가 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경한 양강도 지역의 기혼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탈출과 식량 및 기타 물품의 밀수를 막기 위한 장벽 건설에 사용될 시멘트 벽돌을 만들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밀수는 2020년 국경 봉쇄 조치로 물가가 폭등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장벽 건설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일정에 따라 “20대 신혼 여성부터 60대 여성까지” 시멘트와 혼합하여 10개의 벽돌을 제조할 분량의 모래를 매일 산에서 운반해 와야 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단기 경제계획 이행 과정에서 공장과 농장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했으며 개·보수에 필요한 물자 구매를 위해 근로자들이 곡식이나 현금을 공여할 것을 독려했다. 북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9년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체에 근무할 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이 근로에 따른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액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2020년 양강도 예산의 여성들은 정부 관리가 해당 지역 모든 여성들에게 건설 사업이나 기타 과업을 위해 매일 노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여성들은 벌금을 내야 했고, 보위 당국은 과업 회피자를 체포했다.

2019년 유엔 보고서 <권리의 대가>는 “국가 제도를 벗어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필수적인 생존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려면 뇌물을 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부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북한 정부의 두려움 때문에 더욱 엄격한 국경 및 국내 여행 제한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비공식적 무역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기가 극도로 어려워졌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2020년 보고서 <북한: 제12호 전거리교화소 사진분석 - 개정3판>(North Korea: Imagery Analysis of Kyo-hwa-so No. 12, Jöngö-ri - Update 3)에는 교도소 관리들이 인조 속눈썹 생산에 강제 노동을 이용하는 실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비정부기구 열린북한의 2016년 보고서 <거대한 노예 노동국가, 북한>에 따르면 출신 성분이 낮은 16~17세 청소년들은 10년 간 군대식 건설 돌격대에서 강제 노동에 배치되었다. 한 노동자는 한달 임금으로 고작 120 원(0.15 달러 미만)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일례로, 2016년 “200일 전투” 노력동원 기간에 이러한 어린 노동자들은 하루 17시간이나 일했다. 북한 관영방송은 노동자들이 영하의 기온 하에서 일했다고 선전했다. 한 노동자는 근로조건이 극도로 위험했으며 아파트 한 층이 올라갈 때마다 적어도 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출신 성분이 일생의 직업을 결정하며 출신 성분 최하층은 위험한 광산에 배치된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정부가 시, 군, 구역 단위 “노동단련대”를 운영하면서 단기간 동안 피수용자들에게 강도높은 노동을 강요하고 식량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상습적인 구타를 비롯한 학대를 자행한다고 보고했다. 북한 당국은 암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나 실직자를 이러한 노동단련대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러한 감옥과 같은 여건의 단련대에 구금되어 있고, 위성 사진으로 볼 때 이같은 수용소의 숫자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북한 외부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북한 주민 대다수는 러시아와 중국에 있었다. 또한 조지아(러시아 점유 하에 있는 압하지야 지역), 알제리, 베냉, 카메룬, 적도기니, 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라오스, 모잠비크, 콩고공화국,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당해 연도 중 북한 노동자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돌려보냈으나, 일부 국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노동허가 혹은 기타 서류를 발급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북한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정부 보안요원의 지속적인 밀착 감시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루 평균 12~16 시간, 때에 따라 20 시간까지도 일하고 있으며, 휴일은 매월 1~2 일에 불과했다. 고용주들은 이들의 평균임금이 월 27~90만원(300~1,000 달러)이라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경우 고용 기업은 노동자의 급여를 북한 정부에 직접 지급하며, 정부가 총 수입의 70-90 퍼센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소득은 월 9만원(100 달러) 정도이다. 특정한 경우에는, 파견노동자가 3년 계약을 완료하고 귀국할 때까지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자들은 의류·건설·신발제조·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를 비롯해 별목·의료·제약·식당·해산물가공·섬유·조선 등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도 참조할 것: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 c.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연령

북한 법률은 16 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16~17 세 청소년이 위험한 노동 여건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 법률은 강제 아동노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측자들은 해당 법률이 아동노동이 될 수 있는 최악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 강제 아동노동을 비롯한 아동노동 최악의 형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 관리들은 수천 명의 아동을 억류하고 부모와 함께 노동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북한 정부는 아동 노동 금지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법률 상으로는 아동 노동에 대해 유괴와 같은 유사한 중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북한 관리들은 때에 따라 취학 중인 아동들을 공장이나 농장에 단기간 배치하여 생산목표 달성, 또는 주요 도로 제설작업 등의 특별과제 완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들이 자신의 가족을 떠나 농업부문 사업에 대규모로 동원되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기간이 한 번에 한 달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 년에 두 차례, 각 한 달씩 농장에서 무보수 강제 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HRW는 학교가 교원 급여와 학교시설 유지비를 조성하기 위해 최저 근로연령보다 어린 학생들도 일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2019년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14~15세 학생들이 조선노동당의 아편농장 작업에 동원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10월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 따르면 고아나 길거리 청소년들은 “돌격대”로 장기간·무보수 차출되는 등 아동 강제 노동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OHCHR은 16세~17세 아동이 해로운 노동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200,000명 이상의 청년동맹 관계자와 구성원이 “청년돌격대 활동”에 참여했다는 북한 관영언론의 2021년 8월 보도를 인용했다. 또한 중학교를 졸업한 고아 160여 명이 “수년 간 돌봐 준 조선노동당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자원해서 탄광과 공장으로 일을 나섰다고 전한 북한 관영언론의 2021년 5월 보도를 인용하며, OHCHR은 이러한 고아들이 그간의 돌봄에 “보답”하고자 자원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OHCHR은 “탄광과 같이 위대한 환경 하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노동에 동원하는 것은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로 여겨지며 국제법 상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북한 관영언론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탄광, 공장, 농장, 산림에서 국가를 위해 육체노동에 “자원”했으며, 중학교를 졸업한 700여 명의 고아들이 협동 농장, 철강 단지, 임업 등에 일하기 위해 “자원”했다고 보도했다. HRW는 이러한 “자원” 노동이 실제로는 “극도로 가혹하고 위험한 조건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의 또는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하는 고된 노동”이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6~17세 청소년들은 군대식 건설 돌격대에 10년간 배치되어 장시간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다. 강제 노동의 결과로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 상해, 영양실조, 탈진, 성장장애를 겪었다.

#### **d.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

북한 법률은 모든 주민이 “국가의 모든 영역과 공적활동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노동 능력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종, 종교, 민족, 기타 요인에 기초한 고용이나 직업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북한 법률에는 고용차별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성분제도에 기초한 계급이 동등한 고용기회나 동등한 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 법률은 여성에게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적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노동법 및 국가 지시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 분리가 규정되어 있어 특정 직종을 여성에게 배정하면서 다른 성별은 해당 직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정년은 55세인 반면 남성의 정년은 60세로서, 이 또한 여성의

연금혜택, 경제적 자립, 결정권 있는 지위로의 승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 역시 고용차별을 겪고 있다. 1950년대에 건설된 장애인을 위한 1,200여 개 작업장과 경공업 공장은 대부분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애인 포용적 일터는 제한적이다.

#### e. 용인가능한 근로조건

**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법률:** 북한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영기업이 지급하는 최저임금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때에 따라 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 법률은 1 일 8 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노동 시간은 더 길며, 이는 아마도 김일성·김정일 저서 의무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을 포함했기 때문인 것 같다. 북한 법률은 매주 1 일의 휴일(일요일), 유급휴가, 공휴일, 공공 비용으로 운영되는 요양소와 휴양소의 이용 등 “휴식할 권리”를 모든 주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휴일 대규모 행사와 그에 대비한 예행 연습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므로 휴가나 휴식을 포기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공휴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작업반원들과 함께 “기념”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틀 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가족과 함께 온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임금 체불이 흔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은 비공식 경제 또는 지하 경제에서 소득창출 활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북한 법률은 현대적·위생적 근로조건 제공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 법률은 인명 피해나 기타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자 안전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노동안전 명령” 불이행을 처벌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스스로 이탈할 수 있도록 명시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률의 집행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많은 작업 현장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 재해율이 높은 상황이다. 관리자들은 많은 경우 생산 할당량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고, 교육 및 안전 요건을 무시하는 경우가 잦았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3월 평안남도 승리 자동차 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미훈련 10대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다. 같은 달 “폭풍 부대” 건설 돌격대 소속 노동자 중 최소 20명이 평양 작업장에서 전기 화재로 사망했다.

**비공식 경제 부문:** 북한에는 대규모의 비공식 경제 부문이 존재하지만, 그 규모나 구성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정규 임금과 배급이 충분하지 않아, 다수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비공식 경제에 의존한다. 비공식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당해 연도에 북한 정부가 이러한 비공식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적 통제를 강화했다는 징후가 있다.

**미주(尾註): 자료 출처 관련 주의사항**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북한은 외국정부 대표, 언론인 또는 기타 내빈에게 인권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 또는 보고된 인권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